# 2024 문화창작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개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창작자(기업)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제주도 내 문화콘텐츠 산업화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한 개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#### 1. 사업목적

○ 문화창작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지원을 통해 제주도 내 문화콘텐츠 산업화 기반 확대

#### 2. 사업개요

O 공고기간: 2024. 3. 11.(월) ~ 3. 29.(금)

O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4. 10. 31.

O 사업대상 :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"문화산업"관련 창작품의

법적 권리를 가진 제주도내 소재 관련 기업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

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 창작자

#### <문화산업진흥 기본법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상품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  - 가.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  - 나.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
  - 다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  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  - 마.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
  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 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  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  - 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  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  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 산업발전법」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  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### O 사업내용

구분	개별 홍보마케팅 지원					
지원 대상	도내 소재 관련 <b>기업</b>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<b>개인 창작자</b> 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조 해당)					
지원 규모	2개 기업 또는 개인창작자					
	• 온/오프라인 홍보					
	온라인몰 입점/운영	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입점, 등록 및 홍보(V커머스 등)에 필요한 제반비용				
지원 내용	온/오프라인 홍보물 제작	온/오프라인 홍보에 필요한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				
(선택)	SNS 홍보	홍보용 SNS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(연재형 웹툰 및 이모티콘 제작 등)				
	※ 온라인 홍보의 경우 홍보영상, 온라인몰 입점 등 결과물 제출 필수					
	<u>(최대 4백만원 상당)</u> ※ 용역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진행 / ※ 지원내용 외 본인 부담					
	국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창작품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창작자 및 기업					
지원	※ 국내외 매출계약서,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시 우대					
조건	•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					
	사업계획 제출 시 기발굴 문화창작품의 관련 실적 및 증빙 첨부     지원 후 창작품, 결과보고서/정산서 및 성과활용계획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향후 사업비 화수 및 차년도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을					
	환수 및 차년도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					
	• 사업비 산출에 있어 그 근거가 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가 아닌 경우 •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					
지원	• 공고일 기준으로 지차제 및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•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					
제외	•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					
	<ul><li>※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</li><li>※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</li></ul>					
기타	• 수출계약서: 해당 창작품, 권리, 기간, 계약금액,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되어야 함					
	•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은 창작자(기업)의 부담으로 함 • 지원규모 대비 신청자 및 신청기업 미달 시 재공고할 수 있음					
	• 창작자(기업)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, 구성, 규모,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• 선정된 창작자(기업)가 사업포기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					

# 3. 평가방법

## O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

선정방법	선정기준
서면평가	<ul> <li>○ 평가위원회(5인 이내)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</li> <li>○ 선정기준</li> <li>-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</li> <li>- 우대가점은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</li> <li>- 평가 진행 중 평가위원회가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</li> </ul>

### O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항목 평가요소	
창작품의 우수성	○ 창작품의 우수성, 잠재성 ○ 창작품 활용현황 등 ○ 국내·외 수상이력, 시청률, 매출 등 성과	25점
사업 수행 계획의 구체성/타당성	<ul> <li>계획의 구체성, 내용의 타당성, 추진일정의 명확성, 현실성 등</li> <li>예산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</li> <li>예산대비 결과물(활동)의 적정성(양적, 질적)</li> </ul>	25점
국내외 마케팅	○ 주요 타겟층, 구체적인 전략 수립 ○ 국내·외 시장 진출 역량 보유 현황	25점
결과물 활용계획	○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○ 목표시장에서의 예상 성과를 제시	25점
	100점	
	○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내 입주기업	2점
우대가점	○ 공고일 이전 진흥원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 및 인적자원 DB 풀에 등록된 창작자 및 기업	1점

### 4. 신청접수

○ 공고기간 : 2024년 3월 11일(월) ~ 2024년 3월 29일(금)

○ 접수기간 : 2024년 3월 11일(월) ~ 2024년 3월 29일(금), 15:00까지

O 접수방법 : 제출 전 담당자 메일로 파일 발송 후 우편 및 방문제출

-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ofjeju.kr)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(※ 붙임자료 참조)

- 우편접수 시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,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창작자(기업)에 있음

○ 접수처 :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가동 사무실 (제주 서귀포시 동홍로 41,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가동 사무실)

○ 문의처 :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팀 김상민 주임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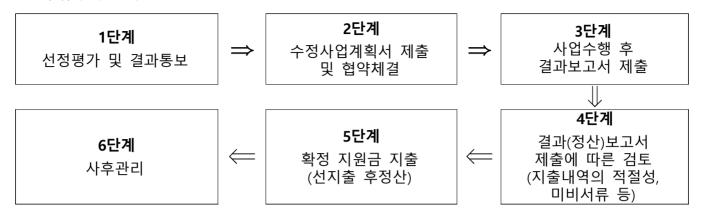
#### O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1	신청서 및 과제계획서	1부	○[서식] 다운로드 후 붙임1, 붙임2 작성
2	서약서	1부	○[서식] 다운로드 후 붙임3 작성
3	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1부	○[서식] 다운로드 후 붙임4 작성
4	평가위원 추첨표	1부	○[서식] 다운로드 후 붙임5 작성
5	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본	1부 [필수]	○ 기업인 경우: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○ 창작자인 경우: 등본 1부 제출
6	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	원본 각 1부	○각 1부 제출
7	최근 2년간 재무제표	각 1부 [선택]	○최근 2년간 재무제표(2022~2023년도) ※ 개인사업자, 단체의 경우 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, 종합소득세신고서 1부
8	기타 추가 자료	각 1부 [선택]	○ 주요 계약서(저작권, 배급, 방송편성, 납품서 등) ○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 ※ 기업일 경우 ○ 문화창작품 참고 자료(이미지, 파일, 인쇄물 등) ○ 기타 창작자/기업의 보유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(인증서 등)

- ※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창작자(기업)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,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※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창작자(기업)가 부담

### 5. 정산 및 지원절차

O 사업수행절차



- ※ 협약체결 이후 집행된 지출에 한해서 인정
- ※ 최종지원금은 원 단위 이하 절사 후 지급
- O 정산내역 증빙자료 : 세부내용은 [붙임6] 참조

### 6. 결과물 귀속

-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작가 및 제작사에가 귀속함. 다만, 아래의 (재)제주영상·문화 산업진흥원의 활용권한을 인정함
  - 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(관)하는 국내·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
  - 창작품 내 제주특별자치도,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 및 로고를 명기

2024년 3월 11일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원장